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58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최보유·서미화·송재봉

이병진 · 김문수 · 김소희

강준현 · 김선교 · 윤종오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"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"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.

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(이주및국적의자유)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. 또한,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 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(안 제11 조제1항제5호 개정).

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"사리 분별력이 없고"를 "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"로, "정신장애인"을 "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으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 ① 법무	제11조(입국의 금지 등) ①		
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			
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<u>사리 분별력이 없고</u> 국내에	5. <u>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</u>		
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			
없는 <u>정신장애인</u> , 국내체류비	<u>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</u>		
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	하는 사람		
람, 그 밖에 구호(救護)가 필			
요한 사람			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